

화평법이 무엇인가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이란 무엇인가요?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 공유하며,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 위험성 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다가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화평법 추진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최근 주요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정치권이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당초 법안의 목적은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업의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 많아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그렇다면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유해성 심사 대상이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제조, 수입자 대상)까지 확대됩니다. 유해성 위주에서 독성과 노출까지 고려한 '위해성'에 기반한 관리로 전환됩니다. 생활용 화학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 기준의 설정근거가 마련됩니다. 등록된 물질에 대해 정부가 심사-평가하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 물질로 지정합니다.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녹색화학센터 지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계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화평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무엇인가요?

화평법은 1) R&D용 등록 2)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3) 영업비밀의 침해 4) 비용부담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산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소량 면제 조항의 삭제'와 '모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입니다.

화평법에서는 연간 사용량 100kg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 물질과 조사·연구개발 목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들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10개월 가량의 등록절차 기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이 늦어질수록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소재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영업비밀 유출로, 화평법에는 하위 사용자와 판매자가 요청할 경우 그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계 측에서는 정보제공 또는 공개의무로 인해 국내 기술이 해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R&D용 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제조/수입량을 고려한 차등화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출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사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국내 화학물질 평가기관의 처리 능력이 부족'을 이유로 들며 화평법 적용 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46개 시험·평가 항목 중 17개 항목은 국내에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화학물질 시험평가를 위해 외국에 로열티를 대거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물질 시험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시험 전문기관 (화학물질분야 GLP 15개) 확충이 기대되며 정부에서도 국내시험 인프라를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 본 글은 화평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화학산업 부문 이중의 상무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